

#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(안) 평창군의회 보고

의안 번호	284-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12.18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,
-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되어, 우리군내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군의회 보고함.  
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」 2011.4.14 일부개정, 2012.4.15 시행
- 이를 통해 시설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도모 하고자함.

## 2. 주요골자

### □ 공간적 범위

- 평창군 전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439개소(1,798,889㎡)

구 분	합 계	집행 군계획시설	미집행 군계획시설			
			소 계	10년 이상 장기미집행	10년 이하 미집행	
계	개소	781	277	504	439	65
	면적(㎡)	5,528,993	3,602,990	1,926,003	1,798,889	127,114
교통시설 (도로, 주차장 등)	개소	640	200	440	386	54
	면적(㎡)	2,134,128	1,101,243	1,032,885	929,456	103,429
공간시설 (공원, 녹지 등)	개소	76	15	61	50	11
	면적(㎡)	1,838,819	950,089	888,730	865,045	23,685
유통및공급시설 (수도공급설비)	개소	12	12	-	-	-
	면적(㎡)	68,617	68,617	-	-	-
공공문화체육시설 (공공청사, 학교 등)	개소	38	38	-	-	-
	면적(㎡)	600,876	600,876	-	-	-
환경기초시설 (오수처리장 등)	개소	6	3	3	3	-
	면적(㎡)	18,417	14,029	4,388	4,388	-
방재시설 (하천)	개소	9	9	-	-	-
	면적(㎡)	868,136	868,136	-	-	-

※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면적산정

○ 장기미집행(10년이상)시설 평가 기준

- 도시계획수립 관련지침, 연구보고서,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평가인자 적용

우선순위평가인자	계량적기준		적용여건
	등급	점수	
1. 시설부지 여건	A B C	12 8 4	•보상비1㎡당 7만원이하 •보상비1㎡당 7만원이상 •보상비1㎡당 20만원이상
2. 시설개설에 따른 수혜도 (개발효과)	A B C	12 8 4	•상업지역 •주거지역, 계획관리지역 •자연녹지지역
3. 주변시설 연계성	A B C	12 8 4	•주변지역 기개발완료 •주변지역 일부 개발 •주변지역 미개발, 민원부재
4. 공사난이도	A B C	12 8 4	•경사도 5도 미만 •경사도 5이상~10도미만 •경사도 10도 이상
5. 우선사업	A B C	12 8 4	•관련부서 사업실시예정, 우선사업 대상 •중장기 사업계획 •관련부서 사업계획 없음
6. 미집행기간	A B C	12 8 4	•15년미만 •15년이상~30년미만 •30년이상
7. 토지소유자 비율	A B C	12 8 4	•사유지가 30%미만 •사유지가 30%이상~80%미만 •사유지가 80%이상
8.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	A B C	12 8 4	•일부집행 비율 50%이상 또는 폭원미달 도로중개설율50%이상 •일부집행 비율 50%미만 또는 폭원미달 도로중개설율50%미만 •전체 미집행
※ 민원발생여부	가중치	+1~+4	•민원없음: +4점, •개별(1인)민원: +3점, •2인이상 연계민원: +2점, •10인이상 집단민원: +1점
	합계	100점	(8개 항목 X 12점 + 가중치 4점)

※ 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집행계획단계설정 (75점이상=1단계, 74점~63점=2단계, 62점~50점=3단계, 49점 이하=4단계)  
: 점수가 높을수록 경우 사업 우선집행 대상임

○ 평창군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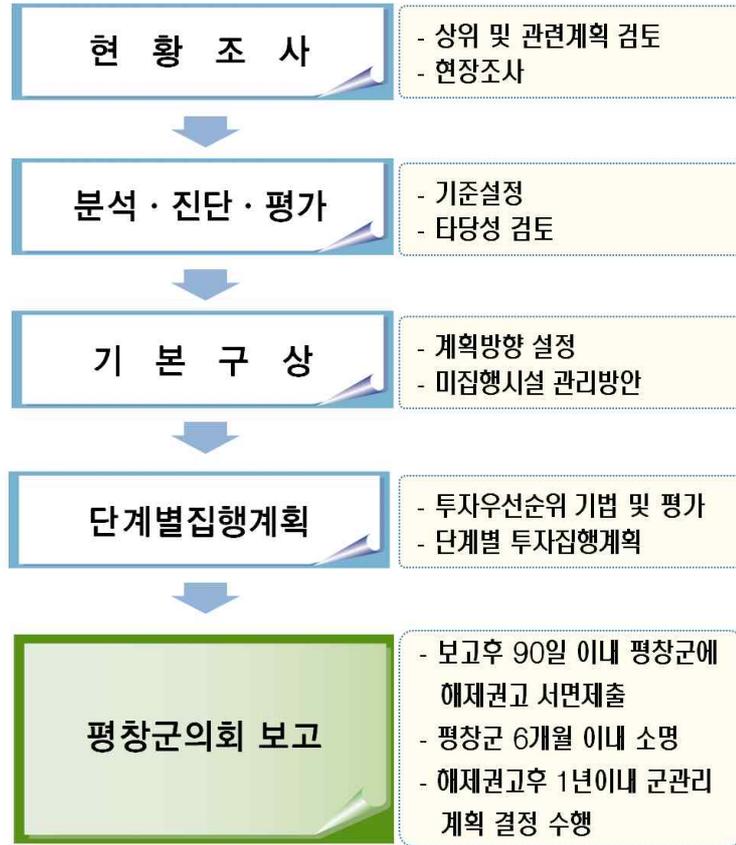
(면적단위 : m<sup>2</sup>)

도시지역		계					교통시설(도로, 주차장)					공간시설(공원, 녹지, 공공공지)					환경기초시설(오수처리장)				
	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합계	개소	439	79	195	153	12	386	70	172	140	4	50	9	22	13	6	3	-	1	-	2
	면적	1,798,889	272,718	615,003	699,313	211,855	929,456	258,956	444,739	221,470	4,291	865,045	13,762	169,765	477,843	203,675	4,388	-	499	-	3,889
평창 도시 지역	개소	24	4	8	7	5	20	4	6	7	3	4	-	2	-	2	-	-	-	-	-
	면적	93,262	4,117	30,477	9,085	49,583	21,310	4,117	4,776	9,085	3,332	71,952	-	25,701	-	46,251	-	-	-	-	-
대화 도시 지역	개소	41	6	12	23	-	37	6	12	19	-	4	-	-	4	-	-	-	-	-	-
	면적	273,863	6,250	111,176	156,437	-	155,677	6,250	111,176	38,251	-	118,186	-	-	118,186	-	-	-	-	-	-
봉평 도시 지역	개소	28	5	8	15	-	26	5	8	13	-	2	-	-	2	-	-	-	-	-	-
	면적	274,758	11,906	52,736	210,116	-	84,583	11,906	52,736	19,941	-	190,175	-	-	190,175	-	-	-	-	-	-
진부 도시 지역	개소	91	15	39	36	1	84	14	34	36	-	7	1	5	-	1	-	-	-	-	-
	면적	399,626	151,780	191,148	53,877	2,821	269,236	149,556	65,803	53,877	-	130,390	2,224	125,345	-	2,821	-	-	-	-	-
횡계 도시 지역	개소	75	4	37	32	2	65	3	35	27	-	10	1	2	5	2	-	-	-	-	-
	면적	503,058	9,823	113,980	225,105	154,150	171,472	2,923	109,811	58,738	-	331,586	6,900	4,169	166,367	154,150	-	-	-	-	-
비도시 (지구 단위 계획 구역)	개소	180	45	91	40	4	154	38	77	38	1	23	7	13	2	1	3	-	1	-	2
	면적	254,322	88,842	115,486	44,693	5,301	227,178	84,204	100,437	41,578	959	22,756	4,638	14,550	3,115	453	4,388	-	499	-	3,889

※ 1단계 : 2013~2015년, 2단계 : 2016~2017년, 3단계 2018~2020년, 4단계(폐지검토)

※ 1단계(우선집행) > 2단계 > 3단계로 순차집행사업 시행, 4단계(폐지검토)

## ○ 수행절차



## 3. 단계별집행계획

- 평창군의회 보고 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
- 총보상비, 계획상 중요도, 관련부서 우선사업, 민원 등을 종합적 검토후 투자우선순위 설정

### ○ 집행계획단계 구분

구분	집행계획	근거
1단계	2013~2015년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75점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개설에 따른 주민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
2단계	2016~2017년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74점~63점으로군계획시설 개설 여건이 양호하여 중기적 개설계획수립에 적합한 시설
3단계	2018~2020년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62점~50점으로 계획상 필요한 노선이나 주변여건상 장기적 개설계획수립이 적합한 시설
4단계	폐지검토	• 우선순위평가 점수 49점 이하로 계획상 불합리하게 지정되어, 실제개설이 불가하거나, 향후 개설 가능성이 전무한 노선으로 폐지 검토

## ■ 관계법령 발취

##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#### 법 제48조 (군계획시설 실효)

- 실효일 :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(2020년 7월 2일 이후)
-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: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에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
- 지방의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함 (1년 이내)
- ※ 2012년 4월 15일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

#### 법 부칙 제16조 (군계획시설 실효 가산일 산정)

-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⇒ 2000년 7월 1일
- 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⇒ 당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결정일

#### 시행령 제48조 (의회보고 내용)

-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등을 말한다)
-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- 그 밖에 지방议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### 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

#### 제1절 일반원칙

##### 4-9-1-2. 기본적인 고려사항

- (1)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“대”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.
- (2) 도시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.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,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
- (3)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·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, 주민·전문가·도시계획사업시행자·관계기관·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.
- (4)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, 자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- (5)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
- (6)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 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도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.
- (7)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.
- (8)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,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.
- (9)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.

##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### 4-9-1-3. 일반적인 재검토기준

- (1) 기술적 가능성 :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,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
- (2) 재원조달 가능성 :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·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,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
- (3)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: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
- (4) 시설입지의 적정성 : 시설의 위치, 폭원, 규모,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
- (5) 장래 계획의 유동성 :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
- (6)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: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
- (7) 적법성 :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
- (8)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: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·재개발구역·주거환경개선지구·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
- (9) 자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: 해당 시·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

##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### 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

#### 4-9-2-1. 도로

##### (1)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(일부구간 포함)

- ①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: 폐지 검토
- ②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: 폐지 검토
- ③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: 폐지 검토
- ④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: 폐지 검토
- ⑤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(지나친 경관훼손, 과도한 터널계획, 지장물 과다분포 등) : 폐지 검토
- ⑥ 시·군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(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) : 존치 검토
- ⑦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: 매수 또는 건축허용

##### (2) 일부미개설 도로(폭원)

- ① 장차 확폭되어야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: 폐지 검토
- ② 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- ③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- ④ 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·소통이 가능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- ⑤ 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(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) : 존치 검토
- ⑥ 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 : 존치 검토

##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(3)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: 조기 보상

(4)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

- ①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(하천복개도로등)가 개설된 경우 : 폐지 검토
- ② 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: 폐지 검토
- ③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된 경우 : 노선축소 검토
- ④ 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다하게 결정된 경우 : 폭원축소 검토

### 4-9-2-2. 공원

(1) 공원기능 상실

- ①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: 폐지 검토
- ②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: 축소 검토

(2)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

- ①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: 축소 검토
- ②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: 건축 허용

(3)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

- ①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(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이 지정, 수립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) : 조정 검토
- ②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: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